채용행사 정보 등 홍보사항

**참여전, 일정 등의 변경 사항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□ 2020 대한민국 고졸 인재 일자리콘서트(6.3~6.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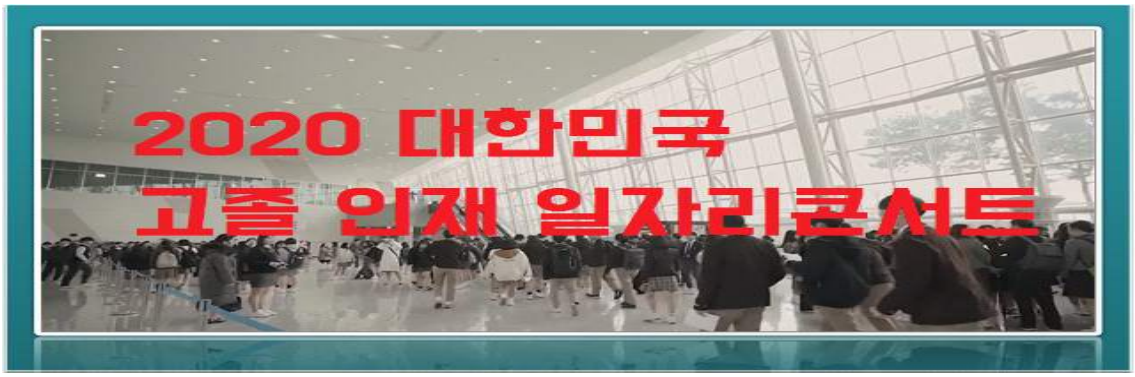

▶| 슬로건: 꿈을 위한 도전

▶| 목 적: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고졸취업을 활성화하고, 청년실업해소 및 능력중심사회 정착에 기여

▶| 장 소: 일산 KINTEX 제2전시장 6홀 (www.kintex.com)

▶| 참가 대상: 고등학교 졸업생, 재학생, 취업담당 교사, 학부모 일반 신입, 경력 구직자(관련기업 참가 시)등

▶| 규 모: 약 100개사 170부스(5,673㎡), 3만명 관람 예상

▶| 참가기관(학교): 총 100개사 170개 부스 (※ 현장채용 65개사)
- 대기업관: 약 15부스
- 금융기업: 약 15부스
- 공공기관: 약 20부스
- 중견(소)기업: 약 45부스
- 대 학: 재직자 특별전형 대학, 사이버 대학 등: 약 25부스
- 산학관: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·중등직업교육 선도학교 등: 30부스
- 기타 부대행사 등: 약 20부스

▶| 구 성: (전시) 채용·상담관, 취업정보 특별관 등
(부대행사) 채용특강·설명회, 진로특강, 진로컨설팅 등

일시	3월25~26일 => 2020년6월3일(수)~04일(목) 변경되었습니다.		
장소	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6홀		
참가대상	고등학교 졸업생, 재학생, 일반신입, 경력구직자(관련기업참가시)등		
행사구성	채용·상담관, 취업정보 특별관 등 △부대행사		
주최	교육부·고용노동부· 중소벤처기업부·한국경제신문		
주관	교육부·고용노동부· 중소벤처기업부·한국경제신문		
기업신청기간	,	개인신청기간	행사당일 참석
문의처	02-360-4509	FAX	--
담당자		E-MAIL	@
사이트(출처)	http://www.gojobcon.kr/main/main.php		

사이트 출처: http://www.gojobcon.kr/main/main.php

보도자료

4월부터 무급휴직 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·생활안정 지원사업 시행

- 총 2,346억원을 투입하여 26만7천명 지원

- 월 최대 50만원, 2개월 지급

<< 사업 개요 >>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**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 등의 고용·생활안정 지원을** 위한 **「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」 사업을 시행**한다.

○ 본 사업은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별도의 **사업계획 공고** 등을 통해 **4월 초에 사업을 시작**할 예정이다.

□ 이번 사업에는 3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**2,000억원의 국비와 346억원의 지방비 등 총 2,346억원이 투입**된다.

○ 국비 2,000억원은 광역자치단체별로 **코로나19 피해상황, 재정자립도, 취업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**하여 배정되었다.

○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**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**에 **각각 370억원과 330억원**이 배정되어 **국비의 35%**가 지원되고,

- **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**에 **30~150억원**이 배정되었다.

* 경기 150억, 서울 130억, 경남 115억, 부산 110억, 충남 105억, 인천 100억, 광주·대전·강원·충북 각 75억, 울산·전북·전남 각 70억, 제주 50억, 세종 30억

○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**지방비를 매칭**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**총 346억원의 지방비가 추가로 투입**된다.

* 서울 151억, 경기 87억, 전북 70억, 광주 15억, 충북 13억, 제주 10억

□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상황이 지역마다 다른 상황에서, 금번 사업 계획은 지역의 일자리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**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수립**하였다.

○ **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**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, **무급휴직 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의 고용·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실시**한다.

- **무급휴직자 고용안정 지원**에는 국비·지방비를 합하여 **총 934억원**이 투입되어 **약 11.8만명**이 혜택을 받고,

- **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**에는 **총 1,073억원**이 투입되어 **약 14.2만명**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.

○ 그 외에도 자치단체별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일용직 등에게 **단기 일자리**를 제공하고, 직업훈련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**훈련생 지원, 사업장 방역 지원**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.

사 업 명	수행 광역자치단체	예산(억원)	인원(만명)
무급휴직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	17개	934	11.8
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	17개	1,073	14.2
특수형태근로종사자·일용직 등 단기일자리 제공	9개	337	0.6
직업훈련생 지원	4개	2.7	0.1
사업장 방역 지원	1개	0.3	-
합 계	-	2,346 (지방비 346 포함)	26.7

□ 사업별 **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일자**는 **자치단체별로 발표**할 예정으로 사업유형별로 사전에 자치단체에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.

<< 세부 사업 내용 >>

□ 첫째, **광역자치단체에서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**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.

* 부산, 인천의 경우 지원기간을 1개월로 줄이는 대신에 수혜자 수 확대

○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일정규모 미만 **사업장***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"심각" 단계 발령(2.23) **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**을 실시한 노동자이다.

* 자치단체별로 5인·10인·50인 또는 100인 미만 사업장 기준 설정

** 자치단체에 따라 **소득기준(예: 중위소득 100%) 설정하여 저소득자 우선지원**

- **영세 소규모 사업장**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,

-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업종제한은 없지만 **인천**은 **수상·항공운송** 관련 업종, **제주**는 **여행업·관광숙박업** 등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.

○ **사업주**가 **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신청서**와 함께 **무급휴직 확인서** (휴직일수, 근로시간 등)를 **관할 자치단체에 제출***하면,

* 지원신청서 접수장소 및 방법은 자치단체별 사업계획 발표 시 구체화해서 공지 예정

- 자치단체(또는 사업수행기관)에서는 **요건 심사를 통해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**한다.

- 만약, 사업주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**노동자 개별신청도 가능**하다.

□ 둘째, **광역자치단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**에게 **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**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.

* 서울, 부산, 인천, 제주의 경우 지원기간을 1개월로 줄이는 대신에 수혜자 수 확대

○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**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종**에 종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이다.

* 자치단체에 따라 **소득기준(예: 중위소득 100%) 설정하여 저소득자 우선지원**

-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“심각” 단계 발령(2.23) **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%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** 지급할 예정이다.

○ 신청희망자는 본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**용역계약서, 위촉서류,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**와 **노무미제공(또는 소득감소) 사실을 확인할 서류** 등과 함께 신청서를 자치단체(또는 사업수행기관)에 제출하면,

- 자치단체(또는 사업수행기관)에서는 요건 심사를 거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에게 직접 지급한다.

□ 셋째, **9개 광역자치단체***에서 **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,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**으로 **단기일자리를 제공**한다.

* 대구, 대전, 울산, 세종, 충북, 충남, 전북, 경북, 경남

○ **사업장 방역 지원인력**, 전통시장 택배 지원인력 등 지역의 수요에 따라 긴급한 부분에 **단기일자리를 제공**하고, 참여자에게는 **1인당 월 180만원(최저임금 기준, 주40시간)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**한다.

□ 이외에도, 4개 광역자치단체(울산, 세종, 충남, 전남)에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**직업훈련이 중단되어 훈련수당을 받지 못하는 훈련생**에게 이에 준하는 **금액(월 12만원, 2개월)**을 지급하고,

○ 1개 광역자치단체(세종)에서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한다.

□ **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**은 “본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 **무급휴직 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**에 있는 분들이 **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를 이겨낼 수 있길 기대**한다”면서,

○ “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**적정하게 그리고 조속히 집행**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.”고 밝혔다.

<참고1> 17개 광역자치단체별 담당자 및 연락처
<참고2> 17개 광역자치단체 예산 및 사업현황

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이창주 서기관(☎044-202-7419), 이원재 주무관(☎044-202-740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**17개 광역자치단체별 담당자 및 연락처**

◇ 자치단체별 **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**이 있는 경우,
아래 **자치단체 담당자에게 문의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담당부서	담당자
서울특별시	일자리정책과 *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	정여원 사무관(02-2133-5447) 엄태근 주무관(02-2133-5455)
	노동정책담당관 * 특고·프리랜서 지원	김경미 사무관(02-2133-5412)
부산광역시	일자리창업과	문정주 팀장(051-888-4373) 이재환 주무관(051-888-4372)
대구광역시	일자리노동정책과	최성우 팀장(053-803-3700) 안미숙 주무관(053-803-3703)
인천광역시	일자리경제과	변영환 사무관(032-440-4231) 박혜란 주무관(032-440-4232)
광주광역시	일자리정책관	이보근 사무관(062-613-3570) 박명순 주무관(062-613-3572)
대전광역시	일자리노동경제과	정환승 팀장(042-270-2660) 박경희 주무관(042-270-2662)
울산광역시	일자리노동과	박정희 사무관(052-229-6840) 박선희 주무관(052-229-6842)
세종특별자치시	일자리정책과	이부호 주무관(044-300-4812)
경기도	일자리경제정책과	엄부길 주무관(031-8030-2893)
강원도	일자리정책과	김 건 주무관(033-249-3241)
충청북도	일자리정책과	김기원 사무관(043-220-3351) 최연락 주무관(043-220-3352)
충청남도	일자리노동정책과	이순재 주무관(041-635-2242)
전라북도	일자리경제정책관	윤세영 사무관(063-280-2825) 최승환 주무관(063-280-2827)
전라남도	일자리정책과	나영수 사무관(061-286-2940) 김석훈 주무관(061-286-2942)
경상북도	일자리경제노동과	김보영 팀장(054-880-2650) 유명상 주무관(054-880-2648)
경상남도	일자리경제과	이승은 주무관(055-211-3314)
제주특별자치도	일자리과	조선희 사무관(064-710-2541) 양기호 주무관(064-710-2542)

“집에서도 집합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!”
원격수업 대체 방안 마련

■ **‘코로나19’에 대비한 직업훈련 공백 최소화, 안정적 과정운영 지원**

■ **한국이러닝협회 등 원격훈련 사업주단체도 콘텐츠 무료제공 등 동참**

□ **고용노동부**(장관 이재갑)는 4월 1일부터 **집합 훈련과정**에 **원격수업**을 **한시적**으로 **허용**한다.

○ 훈련의 목적·내용 등 **훈련과정**의 **동일성**이 **유지**되는 경우와, 훈련과정이 실습보다 **이론 중심**으로 진행되는 경우 **인정**된다.

□ 이번 집합훈련의 원격수업 대체 방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**직업훈련 공백을 최소화**하기 위해 마련됐다. 정부는 **화상 강의 플랫폼**과 **스텝**(STEP) **원격 강의실** 등을 활용하여 **직업훈련**을 **재개**할 수 있도록 **지원할 예정**이다.

* **STEP**(**S**mart **T**raining **E**ducation **P**latform)은 컴퓨터, 모바일 기기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가상훈련 공간이다.

□ **훈련생**이 **원격**으로 **훈련**을 받을 수 있는 **방법**은 크게 **세 가지**다.

○ **첫 번째**, 줌(ZOOM)이나 스카이프(skype) 등 **화상 강의 플랫폼**을 활용하여 **실시간 훈련**하는 방식이다.

- 강의실이 아닌 **화상**으로 **실시간 소통**할 수 있고 **질문**과 **답변**도 가능하다. **집합훈련**으로 **인정**되어 **훈련비**가 **정상 지급**되며, 요건이 되는 **훈련생**에게는 **훈련장려금**도 **지급**된다.

○ **두 번째**, **공공 학습자료**가 등록되어 있는 스텝(STEP*)을 **활용**하는 방법이다.

* **STEP**(**S**mart **T**raining **E**ducation **P**latform)

▸ **(목적)** 훈련의 시·공간적 제약 해소를 통한 **수요자 훈련 접근성 제고** 및 플립러닝 등 **새로운 훈련방식 도입을 위한 기반 제공**

▸ **(기능)** ①공공 **학습 자료 등록**, ②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(LMS)* 등 **훈련 기반 보급**, ③다양한 **공공과 민간의 학습자료 거래·공유**

* 원격 출결점검, 학습이력 관리 등 각종 훈련생 관리를 위한 전산망으로 훈련비 환급 등 행정업무와 교·강사-훈련생 실시간 소통 지원

< STEP의 개념도 >

- 전체 훈련과정 검색·수강 - 훈련생 훈련이력 관리	- 학습 관리 시스템(LMS) 등 훈련 운영 인프라 보급	- 훈련기관↔콘텐츠 개발사 간 자유로운 콘텐츠 거래

- **훈련기관**이 소속 **교·강사**의 **강의**를 **영상제작**하여 **스텝**(STEP)에 등록하고, **훈련생**이 **원격**으로 **수강**하는 방식으로 이때에도 **훈련비**는 **정상 지급**되며 요건이 되는 **훈련생**에게는 **훈련장려금**도 **지급**된다.

- **스텝**(STEP)에 **등재**된 **300여 개**의 **공공 학습자료**를 **활용**하는 **방법**도 있다. **훈련기관**이 **적합**하다고 생각하는 **학습자료**를 선택하면 **훈련생**이 **원격**으로 **수강**하는 방식이다.

○ **끝으로, 원격훈련 사업주단체***가 **보유**하고 있는 **학습자료**를 **활용**하는 방식이다.

* 3개: 한국이러닝협회,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,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

- **원격훈련 사업주단체**는 최근 '코로나19'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함께 하고자 소속 **회원사**가 **개발·보유**하고 있는 **130여개 학습자료**를 **집합훈련기관**에 **무료**로 **제공**하기로 하였다.

□ **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**은 "**이번 대책**으로 '**코로나19**'로 인한 **직업훈련 공백**의 **장기화**에 **대비**하는 한편, **온·오프라인 혼합형 훈련**(Blended Learning)을 **확산**하는 **계기**가 될 것이다."라고 하면서,

○ "**직업훈련**은 **위기**를 **기회**로 만드는 **가장 중요한 수단**이며, **원격**이라는 **제한된 방식**이기는 하나, 향후 **노동시장 활성화**에 대비한 **능력개발 향상**에 **도움**이 되기를 바란다."라고 **강조**하였다.

○ 한편, "**강도 높은 「사회적 거리두기」 캠페인**이 **진행**되고 있는 **중요한 시기**이니만큼 **원격훈련**을 **활용**하여 **훈련기관**과 **훈련생**도 **적극적으로 동참**해주시기를 바란다."라고 **당부**하였다.

□ **자세한 사항**은 **직업훈련포털**(HRD-Net, www.hrd.go.kr)을 통해 **확인**할 수 있다.
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최승훈 서기관(☎044-202-7316) 또는 진영훈 사무관(☎044-202-731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

붙임1 **'코로나19' 대응 집합훈련의 온라인 대체 방안(요약)**

1. 훈련방식 변경

<1> 기준

○ 훈련의 목적·내용 등 훈련과정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훈련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

* 정원, 소정 훈련시간, 교과목별 시간 수 등 훈련의 중요사항 변경 불가

○ 훈련생, 교·강사, 훈련기관 등 관계자 간 사전 협의 필요

○ 이론 관련 훈련내용에 한정하여 원격방식의 훈련 우선실시

<2> 대상훈련: 국민내일배움카드, 컨소시엄 훈련 등

<3> 시행시기: '20.4.1. ~ 별도 해제 시

2. 훈련수단 선택: 훈련기관이 자율 선택

<1> Zoom 또는 Skype 등 플랫폼 활용(권장)

○ **(내용)** 승인받은 훈련과정을 화상 강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시(집합훈련 단가, 평균 6,700원), 해당 훈련기간 **장려금 지급**

○ **(절차)** 시간표 변경 신청 시 '온라인 강의 운영신청서' 첨부하고 온라인 강의가 가능한 교과 확인 후 변경승인

- QR 코드 또는 진행상황 화면 캡쳐(스마트폰 이용자 포함) 등으로 증빙하여 출결 처리

<2-1> STEP 온라인 강의실* 활용 (훈련 영상 콘텐츠 제작·탑재)

* 훈련기관에 ASP(Application Service Provider : 대용량 자원을 공용으로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방식) 형태의 온라인 강의실 제공→ 학습진도율 체크, 질의응답, 공지사항·자료실 운영 등 원격훈련에 활용할 기본기능 제공(LMS 분양에 비하여 훈련 모니터링 기능은 미흡)

○ **(내용)** 소속 교·강사의 강의를 영상으로 제작*하여 STEP(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)에 탑재(집합훈련 단가, 평균 6,700원), 해당 훈련기간 **장려금 지급**

* 훈련교사가 칠판이나 PPT를 활용하여 강의하는 모습을 촬영한 콘텐츠를 STEP에 탑재하여 원격방식으로 훈련 실시

- 직업능력심사평가원(원격센터)에서 적절성을 심사(간소화)

○ **(절차)** STEP에 강의실을 개설하고 콘텐츠 탑재 후 콘텐츠심사에서 적합 통보를 받은 과정에 대해 지방관서에 시간표 변경 요청

○ **(심사기준)** 원격훈련 콘텐츠가 집체훈련 이론교과 내용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가를 심사

<2-2> STEP 온라인 강의실 활용 (기개발된 공공콘텐츠 접목)

○ **(내용)** STEP에 등재된 기술·공학 분야의 297종 공공 콘텐츠를 활용하여 실시(훈련단가 4,600원 적용), 해당 훈련기간 **장려금 미지급**

- 직업능력심사평가원(원격센터)에서 적절성을 심사(간소화)

○ **(절차 및 심사기준) '2-1' 방식과 동일**

<3> 원격훈련 사업주단체 온라인 강의실 활용

○ **(내용)** 원격훈련 3개 사업주단체*가 보유한 130여개 과정을 활용하여 실시, 해당 훈련기간 **장려금 미지급**

* 한국이러닝협회,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,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

○ **(절차)** 협회에 과정개설을 요청한 후 콘텐츠심사*에서 적합 통보를 받은 과정에 대해 지방관서에 시간표 변경승인 요청

* 무료 콘텐츠 제공은 4월 회원가입자에 한해 최대 2개월까지만 지원

○ **(심사기준) '2-1' 방식과 동일**

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모집

근무혁신 우수기업 되면 각종 혜택이 넘쳐난다 !

- **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,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, 각종 정부 지원사업 우대 등 혜택**
- **코로나19에 대응하여 재택근무,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가점 부여**

◆ **고용노동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모집** <3.26.(목)~4.22.(수)>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와 노사발전재단(사무총장 이정식)은 **3월 26일부터 중소·중견기업**을 대상으로 「**근무혁신 인센티브제**」 참여 신청을 받는다.

○ **근무혁신 인센티브제도**는 중소·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**근무혁신 계획**을 **수립**하고 **실천**하면 **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혜택**을 주는 제도다.

-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 중소·중견기업의 장시간 근로와 경직적 근무관행을 개선하고,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해부터 도입했다.

○ 참여 기업이 **자발적으로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**하고 실행한다는 점에서 단순 컨설팅과 구분되며,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**3년간 여러 종류의 혜택이 주어져** 기업에서 관심이 많다.

□ 이러한 '근무혁신 인센티브제'는 ①참여기업 모집·선정, ②근무혁신 이행(3개월), ③근무혁신 이행결과 평가, ④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증패 시상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친다.

○ 먼저 **중소·중견기업**이 **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한 근무혁신 계획을** 평가해서 **참여기업을 선정**한다. **코로나19 상황을 고려**해서 근무혁신 계획 등에 대한 전문가 **현장지원단 컨설팅도 제공**한다.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

○ 참여기업은 **약 3개월**(5~7월)간 **근무혁신 계획을 이행**하고, 이행결과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와 근로자 만족도 조사를 거쳐 '**근무혁신 우수기업**'으로 선발된다.

○ '**근무혁신 우수기업**'은 점수에 따라 **SS, S, A등급**으로 선정되며, 선정 후 3년 동안 정기 근로감독 면제,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(최대 2천만원), 병역지정업체 추천 가점, 가족친화인증제 가점,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여러 종류의 **혜택**이 주어진다.

「근무혁신 인센티브제」 혜택 내용

분야	혜택 내용(3년간)
근로감독 면제	정기 근로감독 면제
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	2천만원 한도(등급별 50~80% 차등)**<'20년 추가>**
병역특례업체 선정(병무청)	1점 가점
가족친화인증제도(여가부)	중소기업 3점, 중견기업 2점 가점**<'20년 추가>**
대출금리 우대	신한(최대 0.5%p), IBK기업(1%p)
고용노동부 장관 표창	SS등급 우수기업
정부지원사업 참여 우대	근로자휴가지원사업(문체부)**<'20년 추가>**, 대·중소기업 생산성 혁신파트너십 지원(산자부) 등 3개 부처의 7개 사업
기업홍보	증권거래소 상장기업 공시(금융위) 등

□ 올해 '**근무혁신 인센티브제**' 평가지표는 유연근무와 휴가제 활성화 등에 초점을 두고 **보완**했다.

○ 특히, **코로나19 상황**에서 많은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**재택근무와 자녀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(전환형 시간제) 등 유연근무** 도입, 안식휴가제와 같은 연차휴가 활성화 등을 추진하면 **정량·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**를 받을 수 있다.

- 아울러, **코로나19에 대응**하여 **재택근무,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제**와 **가족돌봄휴가**를 적극 시행한 기업에는 별도 **가점도 부여**한다.

○ 또한, **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구제절차 마련,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을 조기 도입*하는 사업장**에도 정성평가 우대 또는 가점을 부여한다.

* (도입시기) '20년 300명 이상 사업장·공공기관 → '21년 30~299인 → '22년 5~29인

「근무혁신 인센티브제」 평가지표 주요 변경내용

구분		2019년	2020년
정량 지표	유연근무	200점	230점, 재택근무제·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(전환형 시간제) 가중치(1.5)
	연차휴가	100점	130점
정성 지표	연차휴가	50점	50점, 안식휴가 등 휴가제 신설·운영 우대
	일하는 방식	50점	90점, 스마트팩토리·협업툴 구축 우대
	일하는 문화	50점	50점, 직장내 괴롭힘 예방·해결 제도 마련 우대
가점	법정 일·가정양립제도 이상의 제도 도입 활용	육아휴직,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제도당 10점, 최대 40점	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조기 도입 추가, 최대 40점
	코로나19 예방 제도 도입·활용	-	재택근무,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, 가족돌봄휴가 각 7점, 최대 20점 부여

□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가 **처음 시행된 지난해**에는 122개 기업이 참여 신청을 하여, 77개의 기업이 근무혁신에 참여하였고, **최종적으로 45개의 근무혁신 우수기업이 선정됐다.**

○ 우수기업 유형으로는 SS등급이 11개소, S등급이 17개소, A등급이 17개소 선정되었다.

□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**노사발전재단 누리집**(www.nosa.or.kr)에서 **근무혁신 이행계획서, 참여신청서 서식**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, **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***으로 **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**하면 된다.

* (접수처) (04212)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,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8층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
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송이 사무관(☎044-202-7497), 노사발전재단 윤태웅 선임전문위원(02-6021-120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

붙임1 | **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인포그래픽**

고용노동부

2020

근무혁신 인센티브제
제1차 참여기업 모집

☑ **근무혁신 인센티브제란?**

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한 **중소 · 중견기업**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이행과 평가*를 거쳐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.

* 평가항목: 초과근로, 유연근무, 연차휴가, 일하는 방식 · 문화

신청기간

3월 26일(목)~4월 22일(수)

* 이후 일정

참여기업 선정 (4월말) → 참여기업 근무혁신 실시 (5~7월) → 만족도조사 및 근무혁신 평가 (8월) → 우수기업 선정 (SS,S,A등급, 유효기간 3년) →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기념식 (11월)

신청방법

- **근무혁신 이행계획서*** 및 구비서류를 노사발전재단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
  *그간 추진현황, 이행계획, 선정필요성,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
- 신청서식, 구비서류 등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(www.nosa.or.kr) 재단소식 → 사업공고에서 확인

접수처

(04212)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,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빌딩 8층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

우수기업 주요 혜택

구분	인센티브명 지원내용
감독, 조사 면제 등	정기 근로감독 3년면제
재정 지원	근무혁신 인프라 지원 최대 2천만원 지원
정부 지원 사업 참여 우대	가족친화인증 가점 부여 (중소기업 3점, 중견기업 2점)
	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선정 시 우대
병역특례 우대	병역지정업체 추천 병역지정업체 추천 심사 시 가점 1점
정부 포상	고용노동행정유공표창 선정 시 우대 (SS등급)
금융상 우대	대출금리 우대 (신한은행) 최대 0.5% 우대 (IBK기업은행) 1% 추가감면

문의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(02-6021-1206, 1207, 1029)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
해외감염병 NOW
1339

붙임2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개요

□ **(목적)** '19년부터 **중소·중견기업**의 **자발적**이고, **적극적인 근무혁신**을 **유도**하기 위해 도입

* ('19년 실적) 122개 기업 참여 신청, 77개 기업 참여,
45개 우수기업(SS등급:11개, S등급:17개, A등급:17개) 선정

□ **(사업내용)** 기업이 ❶ 자발적으로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, ❷ 근무혁신을 실시하면(약 3개월), ❸ 계획의 이행정도를 평가하여 ❹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, 인센티브 부여

□ **(평가항목·등급)** **근로시간 단축, 유연근무, 연차휴가, 일하는 방식, 일하는 문화 등**을 정량 또는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

○ **근무혁신 우수기업**은 **3개 등급(SS, S, A)**으로 구분, **유효기간 3년**

* SS(700점 이상), S(600점 이상 700점 미만), A(500점 이상 600점 미만)

□ **(인센티브)** 정기 근로감독 면제, 금리 우대,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, 각종 정부 지원사업 우대, 현장지원단 상담(컨설팅) 등

□ **'20년도 추진계획(안): 근무혁신 우수기업 100개 선정**

구 분	추진일정(안)	비 고
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공모	1차: 3.26.~4.22. 2차: 5월	•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
참여기업 선정	1차: 4월 말 2차: 6월 말	• 서류심사 및 사전검증
참여기업 근무혁신 실시	1차: 5~7월 2차: 7~9월	• 근무혁신 이행계획에 따른 실천 • **기업별 3개월**
현장지원단 운영	5월~10월	• 기초컨설팅, 근무혁신 이행확인을 위한 **현장지원단 운영**
근무혁신 평가 및 우수기업 선정	1차: 8월 2차: 10월	• **근무혁신 이행실적평가**에 따른 **등급부여**
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기념식	11월	• 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
해외감염병 NOW
1339

<인센티브 목록>

구분	인센티브명	지원내용	소관기관
감독, 조사 면제 등	정기 근로감독	3년 면제	고용노동부
재정 지원	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**< '20년 신설 >**	투자비 지원(2천만원 한도, 등급별 50%, 60%, 80%)	고용노동부 *등급별 차등
병역특례업체	병역특례업체 추천	병역지정업체 추천 심사 시 가점 1점	병무청
가족친화기업	가족친화인증 **< '20년 신설 >**	가점 부여 (중소기업 3점, 중견기업 등 2점)	여성가족부
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	고용장려금 지원 사업	사업계획서 심사 시 가점 5점	고용노동부
	산재예방시설융자금 지원 사업	지원 우선순위 결정 시 가점 5점	고용노동부
	재택·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	우선 지원	고용노동부
	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**< '20년 신설 >**	선정 시 우대	문화체육관광부
	대·중소기업 생산성 혁신파트너십 지원	수행기관 선정 시 가점 2점	산업통상자원부
	스포츠용품 해외 인증 획득 지원 사업	지원기업 선정 시 가점 3점	문화체육관광부
	스포츠기업 해외전시 지원 사업 선정 우대	정책부합도 3점 부여	문화체육관광부
정부 포상	고용노동행정유공 장관표창	선정 시 우대 (SS 등급)	고용노동부 *등급별 차등
금융상 우대	대출금리 우대	최대 0.5% 대출금리 우대, 외환, 금융 등 컨설팅 제공	신한은행
		500억 원 특별여신 한도 배정, 최대 1%p 대출금리 추가감면, 경영·세무 등 컨설팅 제공	아이비케이 기업은행
기업 홍보	기업정보 제공 방식 확대	워크넷 테마관 내 홍보 (기업현장탐방기 등)	고용노동부
	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자율공시	근무혁신 등급 관련 내용 포함	금융위원회 *등급별 차등
	근무혁신 우수기업 상징(마크)	등급별 상징(마크) 부여	고용노동부 *등급별 차등
컨설팅 참여	일터 혁신 컨설팅	심사 우대 및 절차 간소화	고용노동부

붙임3 2020년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평가지표

① 근무혁신 평가지표- 정량지표 총 760점

평가항목	평가지표	산출방법	점수
1. 초과근로 (350점) 1 현황 2 감축	1 초과근로자 비중(A%)과 초과근로자의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(B) 현황 * 초과근로자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자 * B > 12시간인 기업은 우수기업 선정 시 제외	1 초과근로 현황 점수= 250 - 5A/4 - 125B/12 * 평가일 직전 3개월 평균	250점
	2 초과근로자 비중(C%)의 감소와 초과근로자의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(D)의 단축	2 초과근로 감축 점수= 50 x {(△C/C+(△D/D)} * 신청일과 개선 종료일 시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감축변화 산출	100점
2. 유연근무 (230점) 1 도입실시여부 2 활용정도	1 도입·실시 여부 □ 유연근무제 인정 유형 ○ 선택적 근로시간제 ○ 시차출퇴근제 ○ 재택근무제 ○ 원격근무제 ○ 전환형 시간제	1 유연근무 도입 점수= 총 5개의 유연근무 중 3개 이상 도입·실시 (50점) 2개 도입·실시 (40점) 1개 도입·실시 (30점) * 평가일 직전 3개월 기준	50점
	2 활용 정도 * 유연근무제 활용률 = 평가일 기준 (직전 3개월 간 유연근무제 이용근로자수/총 근로자수)×100 * 재택근무제, 전환형 시간제의 경우, 활용인원의 1.5 가중치 적용	2 활용정도 점수= □ 20.0% 이상 (180점) 17.5% 이상~20.0% 미만 (160점) 15.0% 이상~17.5% 미만 (140점) 12.5% 이상~15.0% 미만 (120점) 10.0% 이상~12.5% 미만 (100점) 7.5% 이상~10.0% 미만 (80점) 5.0% 이상~7.5% 미만 (60점) □ 5.0% 미만 (활용률(%)×10점)	180점
3. 연차휴가 (130점)	3 연차휴가 활용 * 연차휴가 활용률=0.8x①+0.2x② ①직전연도 연말 기준 (연차휴가 사용일수 / 전체 근로자 연차휴가 부여일수)×100 ②평가연도 평가일 직전월(C) 기준 (연차휴가 사용일수 / 전체 근로자 연차휴가 부여일수*C/12)×100	□ 연차휴가 활용 점수= 100% (130점) 90% 이상~100% 미만 (115점) 80% 이상~90% 미만 (100점) 70% 이상~80% 미만 (85점) 60% 이상~70% 미만 (70점) 50% 이상~60% 미만 (55점) 40% 이상~50% 미만 (40점) 40% 미만 (25점)	130점
6. 만족도 조사 (50점)	1 근로자의 근무혁신 만족도	□ 근로자 만족도 조사 결과 * 조사 응답률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점	50점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

② 근무혁신 평가지표- 정성지표 총 240점

평가항목	평가지표	측정방법	점수
1. 초과근로 (50점)	1 정시퇴근 관리체계 2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보상 3 기타 초과근무 감축 노력	○ 1 2 3 중 시행한 내용에 대해 시행동기, 제도도입, 활용현황, 효과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, 증빙자료 제출	50점
2. (연차)휴가 (50점)	1 연차휴가 등 휴가 사용 활성화 2 연차휴가 등 휴가 미사용 관리 3 안식휴가 등 휴가제 신설운영	○ 1 2 3 중 시행한 내용에 대해 시행동기, 제도도입, 활용현황, 효과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, 증빙자료 제출	50점
3. 일하는 방식 (90점)	1 스마트팩토리, 협업 툴 구축 2 회의·보고 방식 변화 3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4 업무집중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나 관리 5 기타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	○ 1 2 3 4 5 중 시행한 내용에 대해 시행동기, 제도도입, 활용현황, 효과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, 증빙자료 제출	90점
4. 일하는 문화 (50점)	1 관리자의 솔선수범 리더십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해결 노력 3 회식문화 변화 4 기타 일하는 문화 개선 노력	○ 1 2 3 4 중 시행한 내용에 대해 시행동기, 제도도입, 활용현황, 효과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, 증빙자료 제출	50점

③ 가점- 최대 80점

평가항목	평가지표	측정방법	점수
일·가정 양립 제도 도입·활용	법정 일·가정 양립 제도* 이상의 제도 도입·활용	○ 제도 당 10점, 최대 40점	40점
코로나19 예방 제도 도입·활용	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재택근무,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, 가족돌봄휴가 실시	○ 제도 당 7점, 최대 20점	20점
추천	지방고용노동관서장 추천	○지방고용노동관서장 추천서 제출	20점

* (일·가정 양립 제도 가점 내용) 법정기간 이상의 육아휴직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·출산전후휴가·배우자출산휴가·임신기 근로시간 단축·가족돌봄휴직·가족돌봄휴가·유사산휴가, 의무이행사업장 외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(보육시설 또는 보육비 지원 포함), 자동육아휴직,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조기 도입 등